#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8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영교·박 정

이성윤 • 이기헌 • 한민수

진선미 • 김윤덕 • 강유정

김재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보건기구(WHO)는 청소년의 신체·정신 건강·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(중간 정도 이상)의 신체활동(운동)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.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.2%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 024년 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,644명 수준으 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). 법률 제 호

## 학교체육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배치할 수 있다"를 "배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자격기준, 임용 등에"를 "배치 및 자격기준, 임용 등에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스포츠강사의 배치) ① 국	제13조(스포츠강사의 배치) ① -
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	
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	
동 활성화를 위하여 「초・중	
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	
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<u>배치</u>	<u>배치</u>
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	②
<u>자격기준, 임용 등에</u> 필요한 사	배치 및 자격기준, 임용 등에-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